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309
------------	-----

2022년 12월 19일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장태용 의원 외 40명

나. 제안일자 : 2022년 10월 17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라. 상정일자

- 제315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2022년 12월 19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장태용 의원)

가. 제안이유

- 고령운전자(65세 이상)의 비율은 '19년 10.2%(약 334만 명), '20년 11.1%(약 368만 명), '21년 11.9%(약 402만 명)로 해마다 점증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17년 25,713 건에서 '21년 31,841 건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운전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제도'를 도입하여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
-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0. 27. ~ 2022. 10. 31.

○ 제출의견 : 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sup>1)</sup>

○ 제출의견 : 동의

- 조례개정안에 지원금액을 직접 명시하는 것이 아닌 지원범위를 규정하여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개정 취지에는 동의함

---

1) 교통정책과-36060호('22.12.15.)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통해 운전 자제와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금 및 지급방법을 확대하는 한편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 발굴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 고령운전자 사고 및 지원현황

- 전국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19년 3,337천명에서 '21년 4,017천명까지 증가<sup>2)</sup>하였고, 고령운전자 가해사고건수는 '17년도 26,713건에 비해 '21년도 31,841건으로 증가하였음

2) 최근 3년 국내 65세 이상 운전면허취득자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

구 분	'19년	'20년	'21년
운전면허취득자수(천명)	3,337	3,683	4,017

※ 전국 65세 이상 운전자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연 도	사고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2017	26,713	848	38,627
2018	30,012	843	43,469
2019	33,239	769	48,223
2020	31,072	720	44,269
2021	31,841	709	44,713

주)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

- 서울시 역시 65세 이상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17년도 5,021건에 비해 '21년도 5,371건으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서울시 65세 이상 운전자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연 도	사고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2017	5,021	63	6,959
2018	5,869	63	8,054
2019	5,886	49	7,881
2020	5,318	44	7,037
2021	5,371	50	6,986

주)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

- 이에 서울시는 2019년부터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sup>3)</sup>하여 고령자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2년

3) 교통카드 지급실적 및 예산현황

(서울시 내부자료)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교통카드 지원(명) (지원누계 51,036명)		7,500	17,685	10,710	15,141
사업 예산 (천원)	계	750,000	1,768,500	1,071,000	1,514,100
	서울시	650,000	750,000	750,000	750,000
	국비(경찰청)	0	428,500	321,000	464,100
	티머니복지재단기금	100,000	590,000	0	300,000

현재 약 51,036명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상태임

## ■ 고령운전자 지원금액과 방법 관련(안 제4조제1항)

- 동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제1호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 지원에 대한 금액과 방법을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 이내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지급’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조례에서는 지원금액과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서울시는 현재 1인당 10만원의 교통카드<sup>4)</sup>를 고령운전자에게 지급하고 있음
- 경찰청 업무처리지침<sup>5)</sup>의 지자체별 현황에 따르면 지원금액은 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어 동 개정조례안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을 “30만원 이내”로 규정할 경우 현재 지원금액 10만원보다 지원금이 증가하게 되므로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고령운전자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4)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재정지원 방법 등)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불편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카드 지급 등의 방안으로 제2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5)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23년 경찰청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p1

< 지자체별 운영 현황 >

▶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 제반 상황에 맞춰 지급 대상·방법·금액, 「차등 운영」

△ 대상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만65세 ∞ 75세까지 지급대상 기준 차등

△ 방법 : 현금·교통카드·지역화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

△ 금액 : 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다만 고령운전자에 대한 재정지원금 중 일부를 경찰청에서 정률 30% 및 1인당 3만원 기준으로 국비지원<sup>6)</sup>을 하고 있어 1인당 지원금액이 증가할 경우 이에 따른 국비지원 증액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3만원을 초과하는 국비 부분을 서울시 재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

-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은 지원금 지급방법을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경찰청 업무처리지침<sup>7)</sup>의 지자체별 현황을 보면 지급방법을 현금·교통카드·지역화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현재 교통카드로 지급하고 있음

지급방법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할 경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재정지원이 운전면허를 가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해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을 볼 때 서울사랑상품권 지급으로 교통비 지출 보다 다른 부분의 지출을 유도할 수 있고, 현재 교통카드를 주민센터에서 지급하고 있는바 서울사랑상품권 지급시 주민센터 행정업무가 가중될 수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실

6)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23년 경찰청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p2  
- 보조금 지급 기준 : 1인 3만원 기준(정률 보조, 30%)

7) 주석5 참조

질적인 행정업무 이행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간 사전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며 관련 규칙<sup>8)</sup> 역시 일부 개정이 필요할 것임

## ■ 고령운전자 혜택 발굴 관련(안 제5조제2항제4호)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운전면허를 가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 발굴 조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조례에서는 시장이 운전면허를 가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지원 등을 위해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태조사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고령운전자 이동실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고령운전자의 추가적 혜택을 발굴하는 조사를 조사내용에 추가하는 것은 현행 조례상 실태조사의 취지와 내용을 볼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규칙 등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8) 주석4 참조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30만원 이내의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지급
2.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 제공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u>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가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u>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30만원 이내의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지급</u></li> <li>2. <u>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 제공</u></li> </ol>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실태조사)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생략)</li> </ol> <p>&lt;신설&gt;</p>	<p>제5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현행과 같음)</li> <li>4. <u>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u></li> </ol>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